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외국인투자 허용기준의 법령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며, 외국인투자 수탁기관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 명칭 일괄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별표1, 별표2)
- 나. 「정부조직법」, 「방송법」을 준용하여 외국인투자 제외·제한업종 소관부처 개정(별표1, 별표2)
- 다.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용하여 유선통신업 및 그 외 기타 전기통신업의 외국인투자 허용기준 개정(별표2)
- 라. 외국인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권한 수탁기관의 은행명을 현행화하고, 국내영업이 종료된 은행은 목록에서 삭제(별표4)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1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생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규정에서 “수탁기관장“이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 40조제2항에 따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을 말한다.	② ----- ----- ----- ----- <u>산업통상부장관</u> <u>관</u> -----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외국인투자 제한업종) ①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외국인투자 제한업종) ① ----- <u>산업통상부장관</u> -----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 개방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허용기준을 마련 · 고시한다.	④ ----- ----- ----- <u>산업통상부장관</u> ----- ----- -----.
제9조(투자신고 전 사전확인 요청시 필요한 서류 등) ①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u>산업통상자원부</u>	제9조(투자신고 전 사전확인 요청시 필요한 서류 등) ① ----- ----- <u>산업통상부장관</u> -----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국적에 대한 부분은 제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1. ~ 11. (생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 외국인 또는 대상기업은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사본의 내용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대상기업의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외국인 또는 대상기업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이 확인 요청을 한 날은 해당 외국인 또는 대상기업이 변경통보를 한

-----.

-----.

1. ~ 11. (현행과 같음)

② -----

----- 산업통상
부장관-----.

③ ----- 산업통상부
관-----

-----.

④ -----

날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자
료의 보정을 완료한 날로 한다.

제10조(신고 또는 허가내용의 통
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은 법 제5조 또
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
고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허가를
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위
하고자 하는 업종이 추가되지
아니하면서 영 제5조제1항제2
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액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인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
국인투자 허가신청을 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
당 수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
5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거나 불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탁기

----- 산업통
상부장관-----
-----.

제10조(신고 또는 허가내용의 통
보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

-----.

② -----

----- 산업
통상부장관-----

-----.

③ 산업통상부장관-----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이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확인을 받기 위한 요청을 한 경우에 주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에 대해 영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검토요청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외국인 및 해당 수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7조(수탁기관장) ① 영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별표 4의 수탁기관장 및 당해 수탁기관장이 지정하는 무역관·지사·사무소 및 지점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자의 국적이 캄보디아·라오스 또는 쿠바인 경우 별표 4 B나의 수탁은행의 장에 대하여 이를 위탁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

④ -----
----- 산업통상
부장관에게 -----

----- 산업통상부장관이 -----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수탁기관장) ① -----

----- 산업통상부장관-----

-----.

② -----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기 위하여 무역관·지사·사무소 및 지점의 장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수탁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신고와 관련된 서류 모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다른 수탁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수탁기관장은 관련 사실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즉시 통보하고, 관련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탁기관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장에 대하여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 2. (생략)

산업통상부장관

[illegible]

④ 산업통상부장관-----

1. · 2. (현행과 같음)

3. 기타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이 위탁업무를 취소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위임받은 수탁기관장이 당해 위탁받은 권한을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외국인투자의 촉진) ① (생략) ② 수탁기관장은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 이외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수탁기관의 변경)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새로이 사후관리업무를 행하게 된 수탁기관장이 관련서류를 이송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기업 및 종전의 수탁기관장의 명칭 등을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에게 보고	3. --- <u>산업통상부장관</u>----- ----- ----- -- ⑤ ----- ----- ----- <u>산업통상부장관</u>----- -----. 제19조(외국인투자의 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산업통상부장관</u>----- ----- ----- ----- -----. 제20조(수탁기관의 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u>산업통상부장관</u>-----
---	--

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21조(수탁기관장의 협조요청 등) 수탁기관장은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른 고충처리기구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보고) 수탁기관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신고실적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처리준칙)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부터 제2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탁기관장등의 외국인투자자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한 준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의 협조) ① 국세청장은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소득세법」 제70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수탁기관장의 협조요청 등) -----

----- 산업통상부장관 -----

-----.

제22조(보고) ----- 산업통상부장관이 -----

----- 산업통상부장관에게 -----
-----.

제23조(업무처리준칙) 산업통상부장관-----

-----.

제25조(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의 협조) ① -----

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기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대외공개금지대상 정보의 범위 등) ① 규칙 제21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설계도면·생산 공정흐름도·제품생산 등 사업 계획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② (생략)

----- 산업통상부장관
-----.

② -----

----- 산업통상부장관-----
-----.

제26조(대외공개금지대상 정보의 범위 등) ① -----
--산업통상부장관-----

-----.

② (현행과 같음)

[별표1]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제4조 관련)

업종분류	업종명	소관부처
(생략)		
64110	중앙은행	기획재정부
64912	개발금융기관 ※ 특별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 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생략)		
66199	그외 기타 금융지 원 서비스업 ※ 어음교환업 등 금융상품 교환 서비스 외의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외 국인투자 가능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생략)		
84213	환경 행정	환경부
(생략)		
84229	기타 산업진흥 행 정	산업통상 자원부
(생략)		
94931	환경운동 단체	환경부

[별표2]

외국인투자대상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
(제5조 관련)

업종분류	업종명	허용기준	소관부처
(생략)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원자력발전 연 료의 제조·공 급사업을 제외 하고 허용	산업통상 자원부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 업의 허용기준 과 동일	산업통상자 원부

[별표1]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제4조 관련)

업종분류	업종명	소관부처
(생략)		
64110	중앙은행	재정경제부
64912	개발금융기관 ※ 특별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 수출입은행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생략)		
66199	그외 기타 금융지 원 서비스업 ※ 금융상품 교환 서비스(어음교 환업 등 포함) 를 제외한 그 외의 기타 금 융지원 서비스 업은 외국인투 자 가능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생략)		
84213	환경 행정	기후에너지 환경부
(생략)		
84229	기타 산업진흥 행 정	산업통상부
(생략)		
94931	환경운동 단체	기후에너지 환경부

[별표2]

외국인투자대상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
(제5조 관련)

업종분류	업종명	허용기준	소관부처
(생략)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현행과 같음	산업통상부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현행과 같음	산업통상부

업종분류	업종명	허용기준	소관부처
35111	원자력 발전업	<미개방>	산업통상 자원부
35112	수력 발전업	외국인이 한국 전력공사로부 터 매입하는 발 전설비의 합계 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 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한전(자회사 포함)에서 매입 하는 경우에만 해당	산업통상 자원부
35113	화력 발전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35115	풍력 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35120	송전 및 배전업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1. 외국인투자비율 이 50% 미만일 것 2. 외국투자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는 내국인 제1 주주보다 낮아야 함 ※ 전기 판매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 판매사업에 만 해당	산업통상 자원부
35130	전기 판매업		
38240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방사성폐기 물 관리법」 제 9조에 의한 방 사성폐기물관 리사업은 제외 하고 허용 (생략)	산업통상 자원부
60100	라디오 방송업	<미개방>	방송통신 위원회
60210	지상파	<미개방>	방송통신

업종분류	업종명	허용기준	소관부처
35111	원자력 발전업	현행과 같음	기후에너지 환경부
35112	수력 발전업	현행과 같음	기후에너지 환경부
35113	화력 발전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35115	풍력 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35120	송전 및 배전업	현행과 같음	기후에너지 환경부
35130	전기 판매업		
38240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현행과 같음	기후에너지 환경부
(생략)			
60100	라디오 방송업	현행과 같음	방송미디어 통신위원 회
60210	지상파	현행과 같음	방송미디어

업종분류	업종명	허용기준	소관부처
	방송업		위원회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 경우에 허용,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10% 이하인 경우에 허용) ※ 프로그램공급업은 「방송법」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지칭함 ※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송통신 위원회

업종분류	업종명	허용기준	소관부처
	방송업		어통신위원회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생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생략)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업종분류	업종명	허용기준	소관부처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방송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외국인의제 법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함(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60222	유선방송업	종합유선방송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중계유선방송사업은 외국인투자비율이 20%이하인 경우에 허용)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 경우에 허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업종분류	업종명	허용기준	소관부처
60222	유선방송업	현행과 같음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현행과 같음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업종분류	업종명	허용기준	소관부처	업종분류	업종명	허용기준	소관부처
		용) ※ 다만, 종합 편성이나 보 도에 관한 전 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제 외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의 경 우, 대한민국 이 외국과 양 자간 또는 다 자간으로 체 결하여 발효 된 자유무역 협정 중 과학 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자유무 역협정(한미 FTA) 체결 상 대국의 정부 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 식 또는 지분 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 사업법 제9조 제2항 제3호 의 외국인 의 제법인에 해 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 정문 참조)				※ (생략) 방송 미디어통신 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 는 (생략)	

업종분류	업종명	허용기준	소관부처
61210	유선통신업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외국인의 제법인 포함)이 소유하는 주식(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의 합이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 (단, 케이트는 외국인 등이 최대주주가 될 수 없으나 주식 소유가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 ※ 외국인의 제법인 : 외국 정부나 외국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종분류	업종명	허용기준	소관부처
61210	유선통신업	현행과 같음 (단,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익성 심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외국인의 제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법률 제12035호, 2013. 8. 13.> 제2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봄) ※ 현행과 같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종분류	업종명	허용기준	소관부처
		※ 다만,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한-EU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 한-영 FTA)의 상대국 외국인의제법인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61299	그외 기타 전기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업종분류	업종명	허용기준	소관부처
		※ 다만,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한-EU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 한-영 FTA)의 상대국 외국인의제법인의 경우 케이티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으나 주식소유가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	
61299	그외 기타 전기	현행과 같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업종분류	업종명	허용기준	소관부처
	통신업	일 (단, 부가통신 업은 제한이 없 음)	
(생략)			
[별표4]			
<u>외국인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권한 수탁기관(제17조 관련)</u> (생략)			
가. 국내은행			
1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생략)			
나. 외국은행 국내지점			
18. 바클레이즈은행 서울지점(Barclays Bank PLC, Seoul Branch)			

업종분류	업종명	허용기준	소관부처
	통신업	(단, “회선설비 보유사업”에 한 정하며, 회선설 비 미보유사업 과 그 외 부가 통신사업의 경 우 주식 취득의 제한이 없음)	
(생략)			
[별표4]			
<u>외국인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권한 수탁기관(제17조 관련)</u> (생략)			
16. 수협은행			
(생략)			
나. 외국은행 국내지점			
18. <삭제>			